

김선화 / 5월 / 실전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2272	18	12.5	14.5	10.5	55.5	1	3.70%	27
562197	18	10.5	12.5	13.5	54.5	2	7.41%	
562246	17.5	11.5	14	9.5	52.5	3	11.11%	
563313	15	11	14.5	12	52.5	3	11.11%	
563410	19.5	12.5	12.5	8	52.5	3	11.11%	
562199	18	13	13	6	50	6	22.22%	
563271	15.5	13.5	15.5	5	49.5	7	25.93%	
563465	15	10	13.5	11	49.5	7	25.93%	
548660	18	9.5	14	7.5	49	9	33.33%	
563411	18.5	11	11.5	8	49	9	33.33%	
562274	15	12	11.5	9.5	48	11	40.74%	
549662	18	9	12.5	7.5	47	12	44.44%	
548701	15	9	14.5	8	46.5	13	48.15%	
562222	13.5	11	14.5	5.5	44.5	14	51.85%	
549661	15.5	7.5	14	7	44	15	55.56%	
562194	14	11.5	11	5.5	42	16	59.26%	
562775	15.5	8.5	10.5	7	41.5	17	62.96%	
562200	15	7.5	8.5	10	41	18	66.67%	
562882	14.5	7	10	9	40.5	19	70.37%	
562980	15.5	10.5	12	1.5	39.5	20	74.07%	
563201	13	11	9.5	6	39.5	20	74.07%	
563450	12.5	9.5	10.5	5	37.5	22	81.48%	
562215	12.5	8	10	5.5	36	23	85.19%	
563404	10.5	9	8.5	7.5	35.5	24	88.89%	
562195	11.5	9.5	7.5	6.5	35	25	92.59%	
563526	11	9.5	6	7.5	34	26	96.30%	
563068	18.5	10	0.5	0	29	27	100.00%	



저작권법 실전 GS
5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문제 1

저작물성 판단, 인격권 침해

설문 1

- 설문(1)은 이 사건 그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본 논점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께서 배점에 맞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설문 2

- 설문(2)는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는데, 침해요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甲과 乙 각각의 행위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3

- 설문 (3)은 저작물을 까맣게 덧칠하고 전부 소각하는 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는지와 관련된 판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임을 구분하여 작성해주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 두 인격권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결론내주신 분들께는 부분점수만 부여하였습니다.

총 평

이번주차 문제 1번은 익숙하고 중요한 논점들로 구성되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얼굴을 표현한 이 사건 그림의 저작물성을 서술할 때 와 그 침해여부 판단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자세히 활용해서 사안포섭을 세밀하게 해주신 분들의 답변지가 인상적이었으며, 이렇게 기본적인 논점이 출제되는 경우 답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사안포섭으로 차별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

사진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물성

설문 1

• 설문(1)에서는 이 사건 사진과 이 사건 상세페이지의 저작물성을 각각 검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진의 경우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세페이지의 경우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각각의 창작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그에 맞게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이 사건 화면의 저작물성에 대해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할 뿐이라 편집저작물로서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안포섭 해주시면서 저작물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총 평

이번 문제에서는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과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암기하고 계셨다면 역시 무리 없이 풀어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부정되는 판례와 그 결론을 모르셨다면 확실히 정리해가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복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3

불법복제물의 배포권 소진, 간접침해

설문 1

• 설문(1)에서는 乙이 만든 프로그램 저작물이 甲과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진 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그 저작자가 甲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까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업무상저작물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업무상저작물 조항을 준용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설문 2

• 설문(2)는 불법복제물의 경우 배포권의 소진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B 행위가 저작권법상 위법한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B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 124조 제1항 제3호의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바로 침해하였다고 서술하신 분들께는 부분점수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제136조 제2항 제4호가 아니라 제 136조 제1항 4조 등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포섭해주신 분들께는 부분점수만 부여하였습니다. 간접침해의 경우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직접침해는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시 일반적인 경우와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 판례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해도 특약을 하지 않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저작권법 제 45조 2항 본문),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 45조 2항 단서) 사안에서는 丁이 허락 없이도 번역이라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평

문제 3번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무상저작물, 배포권 소진과 간접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같은 논점에 대해 실수하기 쉬운 세밀한 논점들에 대해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

기술적보호조치

설문 1

• 설문(1)에서는 丙의 노래방 운영 및 신곡 녹음 행위의 법적 의의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적행위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적지 않은 배점으로 출제되면 아주 쉬운 공연 복제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술해줄 수 있는 판례가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관련 판례를 사안포섭에 활용해서 결론내 주시면 더욱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이 사건 넘버가 기술적보호조치로서 각각 어떠한 권리에 대해 어떠한 보호조치로 기능하느냐를 개별적 권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丙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조항 위반에 대해 검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인 이 사건 넘버를 불법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 사건 넘버를 판매하는 행위가 방조책임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 행위 금지 조항(저작권법 제 104조의2 제2항 제3호)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평

마지막 문제 4번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낯설어 하시는 기술적보호조치가 크게 출제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접근통제조치인 가목과 이용통제조치인 나목으로 구분되는데, 각 권리별로 개별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보다 수월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2)에서 출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과 설문(3)에서 출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 행위 금지 조항을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도 비교하여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니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1] 195

I. 서문(1)

1. 문제의 소개

이 사건 고장이 미술작품에 해당하는 창작성여부
는 저작권법이든 검토한다.

2. 저작권법 해당여부 - 정족.

(1) 저작권 (제 2조 (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미술작품 (제 4조 (항 4e))

회화, 서예, 조각 등 그 밖의 미술작품을 저작
권법상 본다.

(3) 창작성 판단 기준

① 양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이 독자비
창성인 것이어야 한다

②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을 부여해
독창적 표현으로 제작한 경우 ~~창작성~~ 저작물이다.

(4) 사안.

이 사건 고장은 노반이 연주된 곡의 개성으로
주요의. 곡수명 등 전체적인 형식은 사치적이
없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비라색 등 자연계
에서 볼 수 없는 색상을 고대로 배치하여
노반이를 표현하는 등 제창자가 A의 독창적인

표현에 의해 제각각 2개로 나타내었다.

3. 선문해결

이 사건 2개도 제각각 2개에 해당한다.

II. 선문(2).

1. 문제의 소재.

Q와 R도 이 사건 2개 무방하여 ~~문제~~이 사건
변경하는 2개는 비-침해적인 사적인 복제판
진정한 침해임을 검토한다.

2. 특허 2의 이 사건 2개 저작권상권 침해여부.

~~(1) 침해로 볼 수 없음 (제124조).~~

(1) 침해 요건.

① 유희적인 저작권 존재하고 ② 주권적 모방으로서
역사적, 개인적 모방으로서 실각적 유사성 있어야
한다.

(2) 역사적 중범.

1) 판단기준 제1항.

저작권법상 본래는 ~~판권~~ 범람 아니라 본래
변하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2) 복제 제1항.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필요~~ 가능성 인정된다.



특정할 수 있다.

9) 사안.

이 사건 2명은 청탁대 행사 배경은 사정되어 대응에 미치지 못하였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장이 2명' 검색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점도 특정한다.

10) 신원적 유사성 분석 - 개구.

1) 판단기준 제시.

신원적 유사성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대비하여 판단한다.

2) 사안.

① 이 사건 여타는 이 사건 2명과 유사 점이 형편을 유사하는 보장이 언급된 용도에 배치하고, 전체적인 형상을 사정하여 묘사하여 권장이 새김을 이 사건 2명과 동일하게 파악한다.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검정색 등으로 배치하였다. ② 대비 대신 관련 형태의 유사 특마리가 모서리에 아주 작게 그려있었다.

③ 유사 특마리는 모서리에 아주 작게 그려진 특징은 보장이 크지 않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장이와 2명의 새김이 ~~중요한~~ 극도의 인상이 강한 것임바. 이러한 표현형식이 같은 이 사건

변환을 시작점으로 유사하다.

(4) 소문.

이 변환계량에 20에 의리하였고,
20이 지방하여 발달하였는바. 이 20이
이 시간 20을 차이한 것이다. 0.5

2. 상대 사유.

(1) 복제권 상해.

1) 복제 (제 16조, 제 22조 226).

일대 등의 방화인 이시. 영구적이며 원형에
근거하는 행위이다.

2) 사안.

이 사안 20과 이 유사한 이 사안 변환
계량한 것은 복제권 상해이다

(2) 권리 상해

1) 권리 (제 19조)

20과 같은 이 유사한 등의 원형이나 복제를
권리한 권리 가진다

2) 사안.

이 사안 변환를 이 유사한 변환 변환에 유사
하여 권리하였는바, 권리한 상해이다.

III. 신원(가)

1. 문제의 문제.

2이 창작한 이 사건 풍경을 저작권자인 甲이
인용하는 행위를 SNS에 게시한 경우 2의
인격권 침해인지 묻는다.

OS

2. 이 사건 풍경화의 귀속 관계.

(1) 저작권 (제 10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권을 갖는다.

(2) 저작인격권 - 2.

1) 저작인격권의 인식권속성 (제 43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식에 귀속한다

2) 사안.

(제 22조)

저작인격권인 생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제 13조)

공표권 (제 11조)은 2에게 귀속한다.

제 11조 저작권인격권 - 甲.

甲은 2에게 해당 내 복제에 성취한 작품 2에게

2인 의뢰하고 이 사건 풍경을 2에게

대중을 ~~공개~~로 2에게 하여 양수한 것이다. 저작권인

권은 甲에게 귀속한다.

가. 인격권 침해의 게시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여부

(1) 동일성유지권 (제 13조).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도의

0.5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침해요건

지각과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등에 실질적인 개변이 개변이. 동일성 유지권이어야 하고, 그러한 개변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주 저작자와 감득되어야 한다.

(3) 저작물 전체(혹은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1) 형식

- ① 공식적으로 저작물을 복본적으로 초거본 경우에는 침해로 보며, 원본 초거본의 경우 당연히 공식한다.
- ② 복본적으로 제작 초거본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사상이나 내용과 관련된 우려 없는바 침해 인정하지 않는다.

2) 취사제

- ①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최방후배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변해야한다.
- ② 원고의 작품 보존에 대해 상당한 이익을 가진 인에게도 원고에게 알려지 않은 초거본 때의 복제 제기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방법

저작권법에 소유권이 기인 최방후배유 제1인한



근거 없으므로,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니다.
甲의 선행행위로 2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
되는 것도 아니다

4. 선행의 해결

甲이 이 사건 특허권 선행행위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반(2) 인정권 침해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별)

[문제-2]

12.5

I. 선행(1)

1. 특허의 선행.

이 사건 사원과 이 사건 상해제이리 각각
인정되어 지각물이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해제이리 2대로 특사한 2의 특허권, 무효
권 침해행위, 상정다.

0.5

2. 이 사건 사원의 지각물성 - 333

(1) 지각물 (제 2조 (2))

인간의 사상 또는 행위를 표현한 지각물을
말한다.

0.5

(2) 판단방법 및 사례

[문제-2]

17.5

I. 상문 다.

1. 무제외 문제

이 사건 사건과 이 사건 상대방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침해한 경우 침해 여부도 침해한다.

05

2. 이 사건 사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의 (주요 6항)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된 지식재산권 침해다.

디자인권 침해의 침해성 판단방법 (판례)

디자인권 침해의 침해성은 사물의 구조, 점령 구조
등이 침해적인 관념 비영양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이 사건

1 이 사건 사건은 이물질, 이물질, 같은 법비 등
신체 전체 침해성 있다

2 다양한 사물의 여부는 (비영양성) 후 판례

3 바깥. 바깥 등 사물은 구조롭게 다르다

4 구조와 점령을 달리하는 등 침해성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사건은 디자인권 침해에 비영양한다.

1

5. 국영 가능 절차서

1) 복제 행위

1) 복제 의미 (제2조 2호)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인쇄된 원본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복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안

같은 이 사건 침해행위를 그로 복사한바 실제인 이 사건 사안과 이 사건 침해행위 행위를 복제본 행위에 해당한다.

2) 진술행위

1) 진술 의미 (제2조 10호)

공중상업용 공중의 권리가 제3자에게서 침해된 사실이나 장에서 정당한 수익으로 귀착될 것을 이유로 제공한 것을 뜻하며, 그 때 따라 이권자는 상인을 말한다.

2) 사안

같은 이 사건 침해행위를 그로 복제본 것은 자신의 권리행위에 제공하여 공중의 권리가 제3자에게서 침해된 사실이나 장에서 정당한 수익으로 귀착될 것을 이유로 제공한바 진술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 사건에 이 사건 사건 - 상표페이지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침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0.5

II. 이유이다.

1. 문헌의 문제.

이 사건 라면이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0.5

2. 저작권의 의미(저작권리).

이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3. 이 사건 라면의 저작성 판단.

대 저작성 판정방법 (판례!)

판정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거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본인의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사건.

이 사건 라면은 여기 스킴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라면 2개 정도를 하겠다. (비중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은 UI 및 배치는 인공적 수필성이



3. 업무상 저작물 해명예외의 판단.

다. 업무상 저작물 예외 (제2조3호)

법인-단체. 그 업무 수행의 정당한 범위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작성하다.

예외 사항.

제1항 제1호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업무상 저작물 비영 이익을 목적으로

다. 비영.

1. 공익을 고취하거나 유사하거나 업무상 저작물 권리가
유지됨을 위하여

2. 부당성을 제거하는 경우로 권리행사는 자체적
행위이다.

다. 판례.

1) 일반 프로그램 경우.

프로그램에 대하여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권리는 제외되고 권징은 그 범위를 제정함에
비추어 하여 그 제정이 유효함을 인정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가 이루어지므로,
프로그램의 지시. 명령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제공된 목적으로 책임되어 프로그램 제본자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에
비례한다면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비례한다.

(5) 같은.

제3자는 이와 관련된 - 제3자에게는 것이 판명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도인이 장악한 판명행위
기행하는 권리는 업무상 저작물에 비례한다면 불이
판명하다.

(6) 같은.

Q 이 사건 프로그램은 A만을 위해 저 개발-상품
A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A만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상품 하였으며
Q 이는 A만이 기존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비례하므로

A.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업무상 저작물에 비례한다

47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란 A이 비례한다.

II 사건의.

(1) 배정권 의의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전부나 그 부분을 배정권
권자를 가진다.

2. 배정권의 존속 여부

(1) 권리

지적물의 권리나 그 복제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자가
권리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을 때
경우에는 배정권이 존속한다.

(2) 예외

유형물의 경우엔 적용된다.

(3) 사안

A 사의 프로그램은 유형물이거나 배정권이 존속하는 유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B의 주장은 부당하다.

3. B 행위의 적법성 - 복제권 침해

(1) 복제권의 범위 (제2조 제2항)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에 의한 사본·영사본
제작에 관하여는 권리자가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복제 (제11조)

프로그램을 복제할 경우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되거나 저장장치에 복제 해당한다.

(3) 사안

B 행위는 이 사안 프로그램의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복제권 침해
해당한다.

05

간주



4. 제1회 권리의 정도

- 1) 지식재산권 권리의 범위는 모든 이바의 정액 또는 50%인 이바의 범위에 제한한다. (제13조)
- 2) 모든 비상 법외에 대하여도 50%인 이바의 범위에 제한한다. (제14조)

II. 상회

1. 2차권 지식권 배양이

(1) 2차권 지식권 의미 (제5조)

1차권에서 배양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2차권으로서 독자적인 지식권의 범위를 가진다.

(2) 권리상회 (제6조)

지식재산권 권리 배양이 상회권 유상권이 유상권, 배양권 지식권 인정받은 권리의 유상 권리는 배양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것을 말한다.

(3) 상회

이 상회 권리는 1차권 지식재산권을 배양하는 배양 권리는 2차권 지식재산권 지식권 범위에 배양한다.

2. 2차권 지식권 양도 및

(1) 지식재산권 양도 (제5조 2항)

지식재산권은 권리 또는 이익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양도여부

1) 양도 (등록 2부)

자식에게 양도한 경우 특허권이 있다면
양도받은 자는 출원권은 없음으로 주장한다.

2) 양도 (등록 1부)

양도받은 경우 특허권이 있다면 양도받은 자는
양도권으로 주장한다.

(3) 사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주장 양도권 없음.

3. 결론

지주 박영삼이 출원권을 할 수 있다

1부 4.5

I 사안.

1. 기판의 판례의 부합의 금지 (제104조 제2)

대법원 판례의 의미 (제2조 제2항 제1호)

지정된 특허 출원권을 양도받은 자가
양도받은 특허 출원권을 양도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양도받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한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효과적 이용 위한 필요한 범위 내 변경 허용된다.

④ 사안의 다른 국에서 이동가능하도록 하는 변경,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다른 컴퓨터에서 효과적 이용을 위한 것임을 보일 때, 허용된다.

0.5

3. 결론

주 丙 허락없이, 변의작성 가능하다.

0.5

0.5

[문제-4]

I. 서문 1

1. 丙의 저작 구동 행위 - 공연(2주 3호)

(1) 공연의의 - 2주 3호

공연은 저작물을 재생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한 것을 말하며, 중의인의 정위에 속하는 변경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한다.

(2) 공중의의 - 2주 3호

0.5



블록장 - 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3) 노래방 운영이 공연인지 - 저극

"노래방을 운영하여, 비록 노래방기기가 정유라는 공간을 넘어 입력된 노래를 구동하여 손님들에게 공개한다면, 공연이다"

(4) 사안

兩의 신곡 구동, 노래방 운영은 손님들에게 공개한 공연이다. (공중)

2. 兩의 신곡 녹음 - 복제 (2조 22호)

兩은, 구동하는 신곡을 랜덤플이라는 유체물체에 영구적 복제란 바, 복제이다.

3. 저극

兩의 노래방운영은 공연, 녹음은 복제이다.

II. 식별 2

1. 가발권 보호조치 - 조 28호

(1) 정근동제조치 - 가목

저작권에 대한 정근동제조를 위해 적용되는 조치

(2) 이영동제조치 - 나목

저작권에 대한 이영동제조를 위해 적용되는 조치

(3) 사안

~~이 사건 법원~~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충 - 필연성

"저작권은 개별적 권리의 다변인 바, 어느 쪽의 기술적 보호조치인가 각 행위별로 개별로 파악된다."

0.5

(4) 사안

에 대해서는,

① 丙의 '공연' 행위, 시리멸번호, 청대에 각설되는 것으로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② '복제'에 대해서는 시리멸번호가 청대 장문은 변조되는 '가목'의 조치에 해당한다.

0.5

2. 丙의 저작권 침해사항 - 공연권, 복제권

丙은 공연(2주3회), 복제(2주2회)한 바, 丙의 공연권(17회)와 복제권(16회) 침해다.

0.5

3. 丙의 저작권법 위반사항 - 104조의 2 1항

(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누구든지 정당권을 잃지 고의·과실로 2주28회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면 안된다.

1

(2) 사안

丙의 시리멸번호 불법사용, '복제권(녹음행위)'의 관례상 가목(2주28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즉, 불발함에 해당한다. ㄱ은 정당권으로 없이, 고의
로 2조부터 구제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각 회
제외에 해당할 사정도 없다.

4. ㄱ의 위반사항 - 불발 (136조 2항 3의3)
ㄱ은 업무로 노래방 운영하여 104조의2 1항을 위
반한 바, 불발에 의해 3년이하 징역·3천이하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결론

이 사건 냉버는, ㄱ의 공연당위인 2조28조1항, 복제
에는 2조28조1항의 보호조치이고, ㄱ은 甲의 복제
공연권을 침해했고, 104조의2 1항을 위반하여, 130조
2항 3의3에 해당한다.

Ⅲ. 결론 3

1. ㄱ의 행위 정도 - 104조의2 2항 3항, 2조

(1) 기술적 보호 조치당위 무력화금지

ㄱ은 정당권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목
적으로 용이하게 제작한 시리얼넘버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후, 넘버를 이메일로 판매한



2호

바, 불량 2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2. 2의 직접침해 여부 - 소극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시리미닝버 등을 판매
한데다가, 곧바로 저작권상권 직접침해가 인정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접침해책임은 고지 않음.

3. 2의 방조책임 여부 - 적극

(1) 민법 176조 3항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 사안

"시리미닝버 판매행위로 인해 구매자의 저작권권이
유해되므로, 이것에 판매자가 공동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의 책임이 있다면 방조자로서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2은 방조자로서 공동책임 권 있음.

4. 변칙 - 136조 2항 3의 3

영리목적으로 104조의 2 2항을 위반한 2은, 3년
(판매 등)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